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연계급여 수급권자의 사망신고 간소화〉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565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연계급여 수급권자의 사망신고 간소화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3
다. 관계 기관 의견	6

I. 개요

1.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56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4. 3.
- (3) 회 부 일 : 2025. 4.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그런데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신고서를 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신고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단서 신설).

나. 검토의견

- 망자(亡者)의 동거 친족 등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그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¹⁾
- 그런데, 망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금연계법」”이라 한다)에 따른 연계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사망신고의무자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 사실을 신고하는 것 외에 연금관리기관²⁾에 대하여도 별도의 사망신고를 하여야 함.³⁾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연금관리기관”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 말한다.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연금관리기관”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 말한다.

제24조(사망 신고 등) ①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한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사망 사실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관련 있는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월 법률 제13099호로 공포·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사망신고의무자가 연계급여 수급권자와 관계 있는 여러 연금관리기관에 일일이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대한 사망신고가 관계 있는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대한 사망신고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연계급여 수급권자의 사망신고 창구를 이 법에 따른 5개 연금관리기관 간에 체계적으로 일원화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현행법에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만으로 ‘「연금연계법」에 따른 사망신고’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인바,

각 연금관리기관이 사망신고의무자로부터 직접 연계급여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받지 아니하더라도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⁴⁾’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관련 있는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면 관련 있는 다른 연금관리기관에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

4)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망신고를 한 날부터 수일 이내에 그에 관한 행정정보를 실질적으로 수집·활용하여 연계급여 수급권의 상실이나 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연계법」에 따른 사망신고의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법적 근거가 불비한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사망신고의무자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연계급여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 이를 관계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사망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으로,

사망신고의무자에게 불필요한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사망신고의무자의 편의를 증진하면서, 사망 사실에 관한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있는 법 집행의 실재를 반영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 제24조제1항5)은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단서에서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제121조제2항6) 본문에서도 신고의무자는 “사망사

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4조(사망 신고 등) ①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6) 「국민연금법」

제121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②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24조제1항에서 신고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 연계급여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경우, 각 연금관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를 통하여 사망 여부를 확인 가능한 실재를 반영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임.

*(참고) 「국민연금법」 제121조제2항⁷⁾ 단서가 2016년 5월 신설되어 사망신고의무자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문 의 처

02)6788-5506

7) 「국민연금법」

제121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②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